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152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7.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김철환

[별지]

목 록

[건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연와조및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샌드위치판넬 지붕 3층 다가구주택(5가구)

지하층 67.15㎡

1층 55.26㎡

2층 51.48㎡

3층 38.32㎡

[토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94.6㎡

별지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간의 지위

- 1) 원고는 현재 소외 B(이하 'B'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162,643,610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내역조회)
- 2) 소외 亡 C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A와 D, B 총 3인이 있고, 위 3인은 2020.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한 후, 2020. 9. 7. 피고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갑 제4호증 등기사항증명서).

나. 채납내역

B은 2005년부터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국세 162,643,610원 채납이 있습니다.

<표1> 소제기일 현재 B 채납내역

관할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귀속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세액
중랑	종합소득세	2015.12.31	2015년	2016.08.31	7,381,150	11,820,520
중랑	종합소득세	2016.12.31	2016년	2017.08.31	3,327,430	5,148,800
중랑	종합소득세	2017.11.30	2017년	2017.11.30	3,508,000	4,087,550
중랑	종합소득세	2018.12.31	2018년	2021.02.15	4,969,010	5,906,260
성동	종합소득세	2007.01.02	2005년	2007.01.31	2,826,860	4,946,860
성동	부가가치세	2009.02.01	2006년1기	2009.02.28	3,658,680	3,466,060
성동	부가가치세	2009.10.25	2009년2기	2009.10.25	3,361,040	5,881,670
성동	부가가치세	2009.12.31	2009년2기	2010.03.31	6,930,910	10,000,000
성동	종합소득세	2009.12.31	2009년	2010.08.31	527,290	543,100
성동	부가가치세	2010.06.30	2010년1기	2010.09.30	6,095,760	10,667,030
성동	종합소득세	2010.12.31	2010년	2011.08.31	419,670	432,260
강남	부가가치세	2013.03.31	2013년1기	2013.07.25	8,574,700	2,542,350
강남	부가가치세	2013.12.31	2013년2기	2014.03.31	5,335,610	9,240,830
강남	부가가치세	2014.04.25	2014년1기	2014.04.25	4,261,000	7,379,910
강남	부가가치세	2014.12.31	2014년2기	2015.03.15	15,345,870	11,965,650
강남	부가가치세	2015.04.25	2015년1기	2015.04.25	9,270,000	10,457,880
강남	부가가치세	2015.12.31	2015년2기	2016.03.31	18,500,940	26,477,050
강남	부가가치세	2016.06.30	2016년1기	2016.09.30	5,325,120	5,663,390
강남	부가가치세	2016.10.25	2016년2기	2016.10.25	8,710,000	13,909,700
강남	부가가치세	2017.04.25	2017년1기	2017.04.25	5,307,000	8,331,810
강남	부가가치세	2017.06.30	2017년1기	2017.09.30	2,365,570	3,649,890
강남	부가가치세	2017.08.04	2017년2기	2017.11.30	121,400	125,040
	합 계			총 22건		162,643,610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부
1 관
1,610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일인 2020. 7. 21. 당시 B의 채무초과

1) B의 적극재산

사해행위일 2020. 7. 21.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소외 亡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받게 되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분의1 지분 뿐인 바 그 가액은 73,000,000입니다. (갑 제5호증 재산가액)

<표2>B 적극재산

재산의 종류	소재지	평가액(원)	비고
토지, 건물	서울특별시 중랑구 E	73,000,000	(272,000,000-53,000,000 ¹⁾) ×1/3

2) B의 소극재산

사해행위일의 소극재산은 <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세채무액 162,643,610원 입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가액의 총 합계 53,000,000원(을구 2004. 7. 26.자 제30808호, 을구 2005. 3. 18.자 제9386호, 을구 2015. 1.29.자 제9227호 합계 금액)

3) 소 결

〈표3〉 사해행위 당시 B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종류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서울 중랑구 E	73,000,000	
	소 계		73,000,000	
소극재산	국세	종합소득세 등	162,643,610	
	소 계		162,643,610	
순재산			-	
사해행위			73,000,000	
채무초과			△ 89,643,610	

위와 같이 B은 2020. 7. 21.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채납자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 ①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위 가. 3)항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2020. 7. 21.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B의 사해의사 또한 존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 A이 B과 형제지간으로서 오랜 기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며(갑 제6호 증 주민등록초본) B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할 당시 위 약정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는 2020. 7. 21.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을 2022. 2. 21. 열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갑 제4

호증의 부동산등기 열람일자 참고).

5. 원상회복

① 가액배상의 청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액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정당권을 취득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해당 지분만큼 원물 반환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亡 C의 근저당설정 채무(갑구 5번, 갑구 6번, 갑구 7번)를 피고가 2022. 2. 9.에 근저당설정 채무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원물 반환으로 원상회복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므로 가액 배상을 청구합니다(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 참고).

② 가액배상의 산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배상가액은 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2)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3) 수익자 및 전득자의 취득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취득한 B의 상속재산 지분에 해당하는 86,333,333원²⁾과 채납액 162,643,610원 중 작은 금액인 86,333,333원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B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

2) 소재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 평가금액 312,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53,000,000원 = 259,000,000원 × 상속재산지분(1/3) = 86,333,333원

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86,333,333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